

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. 10. 12.

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회 정수는 9인 이내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1조제1항 및 제2항